전산회계 1급 자격 시험 대비 핵심 요약 정리

**** 전산회계 1급 합격 테크닉**

*** 득점 목표**

- 문제의 구성: 이론(30점), 실습 (70점)
- 70점 이상 합격.
- 실습시험: 60점 이상(최소55점) 취득.
  이론시험: 절반(15점) 이상 취득
- 이론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실기에서 점수를 많이 따야 함.

구분	내용	배점
이론	회계원리	21점(3점*7문제)
	원가회계	15점(3점*5문제)
	부가가치세	09점(3점*3문제)
실기	기초정보	8점
	일반전표입력	18점(3점*6문제)
	매입매출전표입력	12점(3점*4문제)
	오류수정및결산	15점(3점*5문제)
	자산관리	5점
	조회	12점(3점*4문제)

*** 문제 풀이 전략** - 20:20:20 전략

- 20분(이론문제 및 실습 분개, 모르는 문제 체크하고 넘어갈 것),
- 20분(실습 중 전표입력 및 수정, 시간내 못푸는 문제는 포기),
- 20점(결산,조회, 답안저장 후 이론 문제 재검토, 실습문제는 건드리지 말 것)

*** 공부 방법**

- 요약 정리본을 전체적으로 공부한다.
-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당 부분을 찾아보고, 추가적인 사항(부족한 부분)을 기록하고, 시험 직전까지 계속 보고 외울 것.
-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잘 모르는데 중요한 것에는 별표를 치고 집중 공부.
- 중요한 것(쉽고, 배점이 높은 것)부터 확실히 공부하고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공부한다.
  (조회→자산→매입매출전표→결산→전표입력/수정→원가회계→회계원리→부가세)

*** 이론 문제 실전 테크닉**

- 이론 문제 (4지 선다형) - 15문제 (30점)
- 이론 문제와 실기 문제의 분개를 시험 시작 20분내에 시험지에 풀 것.
- 모르는 문제는 반드시 체크해 놓고, 답을 찍을 것. (시간 뺏기지 말 것)
- 잘 모르는 경우, 확실히 답이 아는 것을 먼저 제거시킬 것.
- 답안 저장 후에 시간이 나는 경우에, 모르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더 풀 것.

*** 실기 문제 실전 테크닉**

- 비용 계정 과목 입력시 판매비와 관리비는 8번대, 제조경비는 5번대로 구분하여 입력
- 부가세 유형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 (매입매출전표 입력)
- 결산 사항 입력 후 전표 등록 F7
- 조회 문제, 결산 문제 등에서 확실한 고득점을 할 것.

**** 이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 - 원가 회계**

유형1) 제품 제조원가의 계산

- 총제조비용(총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제조경비
- 제품원가(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 총제조비용 - 기말재공품
- 제품매출원가 = 기초제품 + 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

cf) 상품매출원가 = 기초상품 + 당기상품매입 - 기말상품

- 원재료비 = 기초원재료 + 당기원재료매입 - 기말원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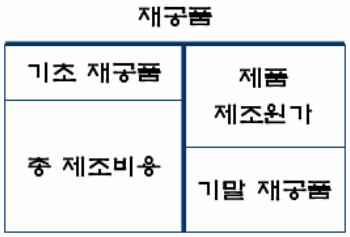

유형2) 원가의 개념 및 구분

- 원가: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 자원
- 제조원가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
- 원가계산의 목적: 매출원가의 계산, 제품원가의 통제, 재고자산의 평가

*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 어떤 제품을 생산에 사용되는지 측정이 가능한지에 따른 분류
- 직접비(직접원가): 특정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간접원가):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
- 제조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 제조간접비는 추적이 어려우며, 각 제품에 배부되어야 한다.

* 기본원가와 가공원가

- 기본원가(기초원가):제품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직접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
- 가공원가(가공비,전환원가): 재료비 이외에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 노무비와 제조경비
- 직접노무비는 기본원가이면서 가공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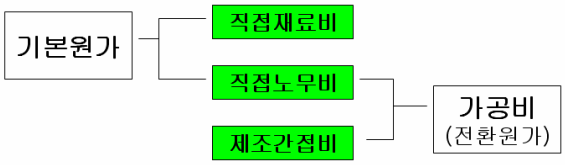

* 표준원가와 실제원가

- 표준원가: 과거의 자료나 이론적인 계산에 의한 표준적인 원가. 내부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
- 실제원가: 실제 발생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실제 원가. 재무제표에는 실제 원가를 표시.

* 원가의 기타 유형

- 매몰원가(sunken cost): 이미 발생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원가.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의사결정 목적으로 사용된다.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지 못하는 이익
  예) 너를 사귀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 커. (너를 사귐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가치)

유형3) 고정원가와 변동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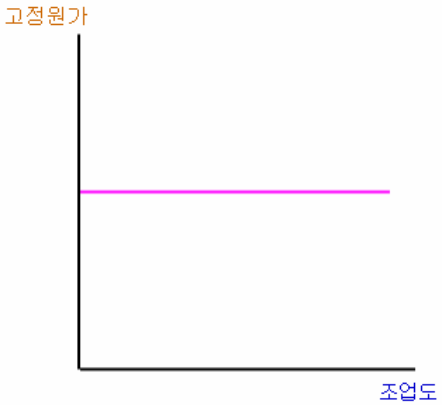

- 조업도(생산량, 직접노동시간 등)에 따른 원가 구분.

* 고정비(고정원가)
- 조업도(생산량)의 변동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
- 의사결정 목적으로 사용
- 조업도가 증가해도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감소.
- 예, 공장건물의 감가상각비, 공장건물 임차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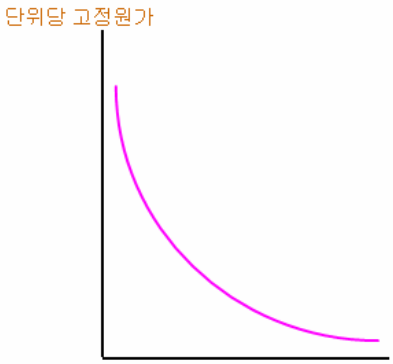

* 변동비(변동원가)
- 조업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원가하며, 총 발생원가 = 단위당 원가 * 조업도
- 단위당 원가는 변함이 없으며, 직접재료비가 대표적.

* 참고
- 직접원가: 기본적으로 변동비(제품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
- 간접원가: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음
- 제조원가=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고정간접비+변동간접비)

유형4) 원가계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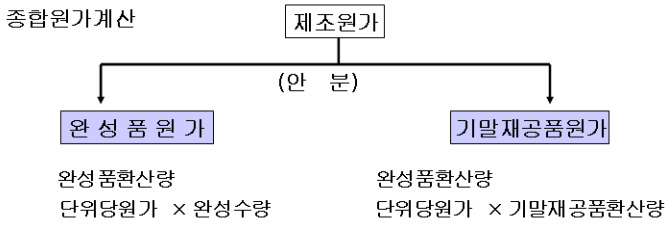

- 개별원가계산: 개별 제품별 원가계산
- 종합원가계산: 제조공정별 전체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 계산

* 개별 원가 계산
- 개별 작업(보통 제품)별로 원가를 산출.
- 생산별 제품별로 투입된 원가요소를 집계.
- 항공기, 조선, 건설 등 주문에 의해 생산되며, 각기 다른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제조직접비와 제조간접비의 구분하고, 간접비를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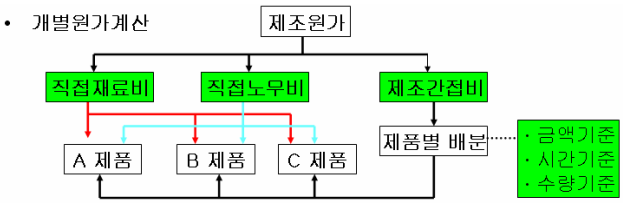

* 종합 원가 계산
- 개별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원가 계산이 불가능
- 공정이나 부문의 전체적인 원가를 계산하여 이를 총생산물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
- 단일의 생산 공정으로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
-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직접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
- 제품 단위당 원가 = 제품 제조 원가 (기간별 총원가) / 완성품 수량 (총생산량)
- 연속된 공정에서 동종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

유형5) 종합원가 계산 방법

- 공정이나 부문별로 원가를 집계 → 생산된 제품에 균등 배부
- 재공품에 대해 완성품 환산량 (재공품 * 진척도)을 계산
- 직접재료비와 가공비(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산
- 계산 순서: 1) 물량파악(몇 개를 투입해서, 몇 개 완성, 몇 개 재공) 2) 완성품 환산량 계산 3) 총원가 계산 4) 환산단위당 원가 계산 5) 완성품과 기말 재공품의 원가 계산

* 평균법 (기초재공품 원가와 당기 투입원가를 합해서 계산)

- 기초재공품과 당기투입분이 섞여서 완성품과 재공품이 만들어짐.
- 환산 단위당 원가=(기초재공품원가+당기투입비용)/(완성품수량+기말재공품환산량)
  즉, (기초원가+추가투입원가) / 총작업결과수량
- 완성품환산량계산: 기말 완성품 + 기말 재공품 * 진척도
- 모든 완성품 및 재공품의 원가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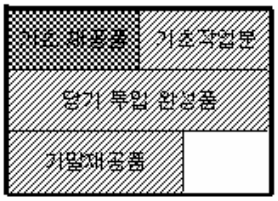

* 선입선출법 (당기 추가 가공분만 계산)

- 기초재공품이 먼저 완성되고, 다음에 당기투입분이 완성. 기말재공품은 모두 당기투입분
- 완성품을 기초재공품 완성분(기초분)과 추가투입에 따른 완성분(추가분)으로 구분
- 환산 단위당 원가=당기투입비용/(기말재공품환산량+기초분작업환산량+추가분완성량)
  즉, 추가투입원가/추가작업량 → 당기완성품 및 재공품 원가 계산
- 기초분 완성품 원가 = 기초재공품 원가 + 기초분 작업량 원가

<예제> 기초 김밥 만들다 남은 것(기초 재공품): 100개분, 60% 완성, 원가 50,000원
당기 투입원가: 440,000원. 완성품 : 400개, 기말재공품: 200개 (진척도 50%)
1) 물량파악: 기초 (100개) + 투입 (개) = 완성 (300개) + 기말재공 (200개)

(평균법)

- 총투입원가 = 50,000원 (기초재공품분) + 440,000원 (당기투입분) = 490,000
- 기말환산수량: 400개(완성품) + 100개(기말재공품 200개*50%) = 500개
- 환산단위당 원가 = 총투입원가 / 기말환산수량 = 490,000/500개 = 980원
- 기말재공품 원가: 980원 * 200 개 * 50% = 98,000원 (개당 490원)
- 완성품원가 : 980원 * 400개 = 392,000 (개당 980원)

(선입선출법) - 완성품(400개) = 기초분 작업분 (100개, 40%추가작업) + 추가분 (300개)

- 당기생산환산수량 =40개(기초재공품,100개*40%) + 300개(당기투입 완성품)
+ 100개(기말재공품 200개*50%) = 440개
- 기말재공품 환산단위당 원가 = 440,000(당기투입원가) / 440개 = 1,000원
- 기말재공품 원가: 1,000원 * 100 단위(200개 * 50%) = 100,000원 (개당 500원)
- 완성품 원가(추가분) = 1,000원 * 300 개 = 300,000원 (개당 1,000원)
- 완성품 원가(기초분) = 1,000원 * 40개 (100개*40%) + 50,000원(기초재공품원가)
  = 90,000원 (개당 900원)

유형6) 제조간접비의 배부

- 제조간접비: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제조경비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제품(2종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된 원가요소
- 각 제품별로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각 제품에 배부해야 함

* 제조간접비의 배부 방법
- 실제배부법: 가액법(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원가 등을 기준), 시간법(직접노동시간, 기계작업시간 등 기준)
- 예정배부법: 미리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을 산정하고, 제품 완성시 실제로 발생한 직접재료비나 직접노동시간 등을 곱하여 계산

* 원가의 배부 원칙
- 인과관계기준(cause and effect), 수혜기준(benefits received), 부담능력기준(ability to bear),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fairness and equity)

* 간접비의 배부 절차
- 1단계: 부문직접비를 각 부문에 직접 부과
- 2단계: 부문간접비(여러부문에서 공통 사용)를 각부문에 배부
- 3단계: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
- 4단계: 제조부문비를 각 제품에 배부

보조부문	배 분 기 준
건물관리부문	면적
전력부문	사용한 전력량 및 전기용량
수선유지부	수선횟수 또는 수선유지시간
식당부문	제조부문의 종업원수
구매부문	주문횟수나 주문비용
창고부문	재료의 사용량
인사관리부	종업원수
시설유지부	점유면적

유형7) 보조부문의 원가 배부

-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조부문으로 배부하는 것

제조부문	•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부문을 말한다. • 주조부, 단조부, 선반부, 절단부, 조립부, 도장부 등
보조 부문	• 제조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제조부문에 자기가 생산한 제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 및 공장의 관리사무부문을 말한다. • 동력부, 용수부, 수선부, 품질관리부, 공구제작부, 공장관리부 등

* 직접 배분법:

-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직접 배분.
- 보조부문사이의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

* 단계 배분법
- 보조부문간의 원가 배분순서를 결정.
- 일단 보조부문에 원가를 배분하면 부문에는 재배분하지 않는다.
- 보조부문2의 원가배분대상액 = 보조부문2의 부문직접원가 + 보조부문1의 배분액

* 상호 배분법
- 보조부문 사이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 보조부문간에 원가를 상호 배분한 후, 이를 제조 부문에 배분.
- 보조부문원가의 배분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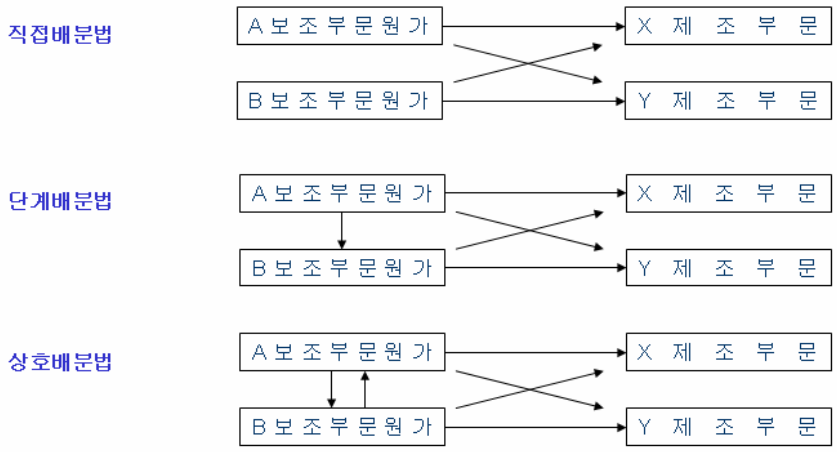

유형8) 공손품의 처리
- 공손품: 규격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
- 정상적인 공손: 완성품이나 기말재공품의 원가에 포함
- 비정상적인 공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 이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 - 부가가치세 (3문제)**

유형1) 부가세의 회계 처리

- 매출부가세: 매출시 받는 부가세. 세무서에 납부할 부채. 부가세 예수금
- 매입부가세: 매입시 내는 부가세. 나중에 돌려받을 자산. 부가세 대급금

* 판매시

- 구매자로부터 부가세(공급가액의 10%)를 받고, 구매자(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예) 외상매출금 110,000 / 상품 매출 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

* 구매(매입)시

- 판매자(공급하는자)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지불.
- 반드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부가세를 지불했다는 증거)를 받아야 함.

예) 원재료 100,000 / 외상매입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 부가세의 신고 및 납부시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 - 매입세액(부가세 대급금)
-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음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 부가세예수금 200,000 / 부가세대급금 150,000
현금 50,000

유형2) 매입세액 불공제

- 매입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
- 부가세 납부액 = 매출세액(매출액*세율) - 매입세액 + 불공제 매입세액

*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유형-(매우 중요)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신청일 20일 이전의 매입세액
- 기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불분명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제출, 부실기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기초 생필품,의료,교육,도서 등), 토지 관련 매입 세액

*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 원가에 포함시킨다. 예) 접대용 선물 10,000원, 부가세1,000원을 지불한 경우.
차) 접대비 11,000 대) 현금 11,000

유형3)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세 실무

* 사업자의 유형
-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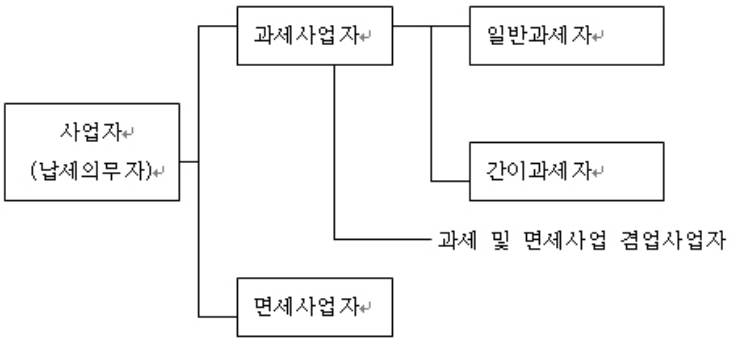

* 일반 과세자
- 매출 4,800만원 초과 혹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지역 사업자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소매업·음식점업·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는 영수증 교부 가능.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특정 업종에 종사하면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 매출시 부가세를 받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 가능.
-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음.
- 간이 과세자가 지불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만 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환급 세액이 발생해도 환급 받지 못함.

*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
- 1기(1월~6월),2기(7월~12월)의 과세 기간으로 구분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익월25일까지)
- 일반 과세자는 중간의 3개월(~3월, ~9월)에 대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함.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2번의 확정 신고만 함.

* 부가세 예정 신고 (일반과세자에만 해당)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 결정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필수적
- 개인사업자: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을 예정 고시 납부 가능 (선택적)

유형4) 매출 부가세의 과세 표준

* 부가세 과세표준: 납부해야 할 부가세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 보통은 매출액
- 금전을 대가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경우, 받은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 무상 혹은 지나치게 낮은 대가, 폐업시의 재고 재화에 대해서는 '시가'
- 특소세

*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에누리(불량으로 깍아준 것),환입(반품 받은 것), 연체이자, 봉사료, 무상으로 지급한 용역

*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금액: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 등
- 깍아주거나, 받지못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해도 매출에서 제외시키지 못한다.

유형5) 세금계산서와 거래 증빙

* 세금계산서의 개념
- 부가세의 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 부가세를 수령한 공급자가 발행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 (판매자 → 구매자)
- 월별 합산 가능, 통신망에 의한 전송 가능, 5년간 보관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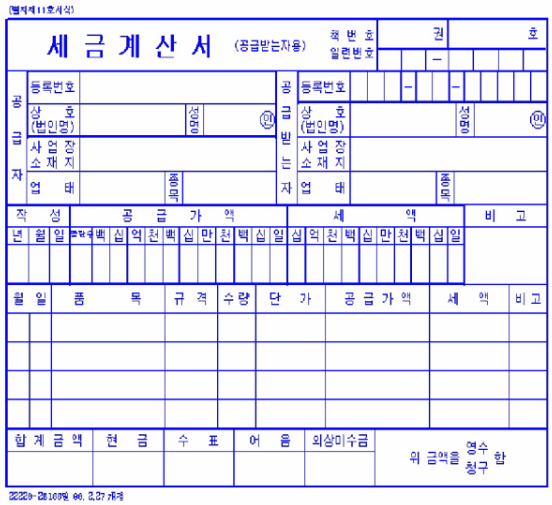
세 금 계 산 서 (공급받는자용)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필요	필요
성명 혹은 명칭	필요	
공급가액과 VAT액	필요	필요
작성연월일	필요	필요
주소, 단가와 수량,공급연월일		

* 세금계산서의 발행
- 일반 과세자만 발행하며, 동시에 의무.
- 공급받는자의 유형에 관계없이 발행.

(면세/간이 사업자,개인에게도 발행해야)

* 필요적 기재사항
- 거래 양방의 등록번호, 공급자의 이름, 작성연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 필요 기재 사항 누락시 효력 없음.

* 영수증
- 부가세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안됨.
- 간이과세자 혹은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영수증으로 간주

* 계산서
-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없음.
- 거래를 하고 계산서를 받았다면, 면세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

유형6) 면세 사업자의 부가세 처리

* 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매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계산서를 발행
- 부가세 납세의무는 없으나 계산서교부 및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음.

*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금융보험, 도서/신문/잡지, 대중교통, 교육, 토지,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우표(수집용 제외), 접대부/댄서, 저작권 사용료, 종교/자선/학술단체의 재화,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주택의 공급
-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 (주의: 상가, 토지의 임대 등은 과세)

유형7) 특수한 경우의 부가세 처리

* 수입시의 부가세 납부
- 관세, 보험료, 운송료, 기타 세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부가세를 납부
- 관세청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다.
- 따라서 부가세가 공급가액 * 10%가 아님.

* 수출용 재화의 공급 - 영세율 적용
- 수출 대행 업체에 대한 매출(local 수출) 또는 수출용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공급
-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하며, 세율을 0으로 함.

* 직수출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음.
- 매입세액은 공제받으므로 이익. 수출 진흥 목적.

* 신용카드 매출
- 일반과세자로부터 이면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 받음.
-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은 매입 세액 공제 안됨.
- 신용카드로 매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할 수 없음.

유형8) 기타 매입 세액 공제
- 기타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공제되는 매입 세액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품 매입에 따른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부가세,공급가액 따로 표기되며 뒷장에 이면 확인을 받은 경우
- 기타: 재활용폐자원매입,재고매입,변제대손세

* 의제 매입 세액 공제

- 면세 재화를 공급받아 과세 매출하는 사업자에게 면세재화의 매입세액 일부를 공제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가공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과세 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가능.
- 신용카드 등 수취 명세서를 받아야 함.
- 2006년 6월 현재 공제율:2/102, 단 음식점업은 5/105 → 3/103

**** 이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유형 - 회계원리 (7문제)**

유형1)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 토지를 제외한 유형 자산에 대해서 처리

- 감가상각의 개념: 유형자산을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비용 배분하는 것.
- 감가상각대상액: 취득원가 - 잔존가액
- 토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하고 감가상각
-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
-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와 제조경비로 구분하며, 감가상각누계액은 계정과목별로 구분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정율법: 매년 동일한 비율로 상각. 초반에 많이 상각
  ; 감가상각액 = 장부가액(자산의 B/S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율
- 생산량 비례법: 사용 량에 따라 감가상각
  ; 감가상각대상액 * 당기실제생산량/전체 기간동안의 추정생산량
-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대상액* 잔여내용연수/잔여내용연수합계

유형2) 회계 처리 과정 및 기타

* 회계 처리 과정

- 회계거래 → 분개 및 전표입력 → 총계정원장으로의 전기 → 시산표의 작성 → 결산분개 입력 → 재무제표
- 수정후 시산표 → 손익계산서 마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대차대조표
- 결산분개: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매출원가, 감가상각, 대손상각

* 기타 이슈

- 회계상의 거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래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주기와 주석
- 장부가액: 평가계정(감가상각누계액,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유형2) 유가증권의 회계처리

- 유가증권: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 목적(배당금 수익,시세 차익)으로 타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회사채,국채,지방채) 혹은 타기업 지배/통제를 목적으로 보유한 증권

* 유가증권의 분류

- 단기매매증권: 단기 투자 목적. 매수/매도 빈번 (당좌자산)
-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되어 있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는 채권 (투자자산)
- 지분법적용증권: 타기업의 지배/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으로 해당 회사 주식 20% 이상 소유한 경우. (투자자산)
- 매도가능증권: 기타 증권. 투자자산

보유목적	단기매매	장기투자	만기보유	경영권행사
주식	단기매매증권(T/S)	매도가능증권(AFS)	x	지분법 적용증권
채권			만기보유증권	X

* 취득시

- 매입가액과 부대 비용(수수료, 세금 등)을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예) 단기매매증권 1,005,000 / 현금 1,005,000

* 배당/이자 수령시

- 배당금수익 혹은 이자수익 (영업외 수익)

예) 현금 20,000 / 배당금수익 20,000

* 기말 평가시 (단기매매증권에 한함)

-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하며,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손실)-영업외

예) 단기매매증권 55,000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55,000

* 처분시

- 처분이익과 처분손실 (영업외)을 인식

예) 현금 600,000 / 단기매매증권 53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70,000

유형3) 유형자산의 처분

- 사용중인 유형자산(차량운반구,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변에,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실수령액을 수령방법에 따라 차변에,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영어외수익, 대변)이나 유형자산처분손실(영업외비용,차변)에 인식.
- 취득원가 40,000,00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30,000,000원인 건물을 20,000,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로 받았다.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 건물 40,000,000
현금 2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영업외이익) 10,000,000

유형4) 매출 채권의 처분

-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을어음(금액,만기일을 표시한 증서 채권)
- 외상매출금의 팩터링: 외상매출금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차입거래로 처리(단기차입금 및 이자비용)

* 받을어음의 배서양도 및 할인, 부도
- 배서양도: 제3자에게 양도, 혹은 물대로 지급
  회계처리: 차) 외상매입금 xxx / 받을어음 xxx
- 부도 발생시: 부도어음으로 처리
  차) 부도어음 xxx / 받을어음 xxx
- 할인: 일정금액을 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
  → 차입거래: 차입금, 지급이자로 처리 (어음은 담보로 제공)
  예) 현금 900,000 / 차입금 1,000,000
  지급이자 100,000
  → 처분거래: 받을어음을 없애고,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
  예) 현금 900,000 / 받을어음 1,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00

유형5) 매출채권의 대손

- 대손: 채권(매출채권, 대여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
- 대손 충당금: 매출채권중에서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매출 채권의 차감계정.
  예) 외상매출금 5,000,000 대손충당금 500,000

* 대손의 회계처리
- 기말에 대손 예상액만큼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차) 대손상각비(판) 500,000 / 대손충당금 500,000 (부족분 만큼만)
-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
  차) 대손충당금 500,000 / 외상매출금 800,000
  대손상각비 300,000
- 기말에 대손 예상액보다 충당금 잔액이 더 많으면, 충당금환입(수익)
  차) 대손충당금 100,000 / 대) 대손충당금환입 100,000

유형6) 매입과 매출의 차감 거래

- 매출할인(조기 상환에 따른 할인), 매출환입(불량으로 인한 반품) 및 매출에누리(불량으로 인한 할인)는 모두 매출총액에서 차감한다.
- 매입할인, 매입환출 및 매입에누리는 모두 상품총액에서 차감한다.
- 매입이나 매출 부대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유형7) 유형자산에 관련된 지출

- 유형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형체가 있는 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등.
- cf)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투자부동산 (투자자산)
- 취득원가 = 취득가격 + 사용을 위한 부대비용 (설치비, 운송비, 세금, 복구비용 등)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 자산의 미래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자산 가액을 증액하여 처리(자본적 지출). 그렇지 않은 경우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로 처리.
- 자본적 지출의 3대 조건: 내용연수 연장, 용량(성능) 증대, 품질 개선
- 수익적 지출: 원상 회복, 능률 유지

예) 냉난방 공사비 건물 10,000,000 / 당좌예금 10,000,000
차량운반구 xxx / 현금 xxx (자본적 지출)
차량유지비(혹은 수선비) xxx / 현금 xxx (수익적 지출)

유형8) 무형자산 - (종류를 잘 외워둘 것)

- 장기간 영업 및 생산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
- 감가상각의 대상. But, 직접상각 (누계액 없음), 잔존가액 0, 정률법을 추천.
- 영업권(합병 손실), 산업재산권(상표권,특허권), 창업비, 개발비, 저작권, 소프트웨어, 광업권, 어업권 등. Cf) 연구비: 비용
- 내용 년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합리적인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
- 상각액은 자산에서 직접 차감. Cf)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

예) 무형자산 상각비 xxx / 산업재산권 xxx

유형9) 수익 인식의 원칙 - 실현주의

- 수익창출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이 완료되고(가득요건), 현금 유입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합리적인 측정 가능(측정요건)
- 회계기준: 재화- 인도 시점, 용역- 진행기준

* 특수한 경우의 수익 인식 시점
- 위탁 판매 : 수탁자가 그 자산을 매매. 양도한 시점
- 시용 판매 :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한 날
- 상품권 판매 :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으로 물품을 교환한 날
- 할부 판매: 인도시점에서 현재 가치로 수익 인식
- 예약 매출 및 도급 공사: 진행기준 혹은 완성기준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1년내 완료되는 용역(예, 단기 건설 공사)은 완료시점에, 1년 이상의 할부 매출은 할부금 회수 기일이 도래한 날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유형10) 재고 자산의 평가

* 재고 자산 평가의 필요성

- 상품매출원가 = 기초상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상품재고
- 기말상품 재고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수량 결정 방법

- 계속기록법: 입고 및 출고시 수량 기록하여 재고 파악
- 실지재고조사법: 입고량만 기록. 재고수량은 실사하여 파악

* 단가 결정 방법

- 개별법: 개별 재고에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
- 선입선출법(FIFO): 먼저 구입한 게 먼저 출고.
- 후입선출법(LIFO): 나중에 입고된 게 먼저 출고.
- 이동평균법: 출고시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
- 총평균법:기말에 평균단가 계산 일괄적용. 출고단가=재고단가.

  단가=(기초금액+매입금액)/(기초수량+매입수량)

품목명	기초재고		자재입고		출고(투입)		기말재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화기	120	60,000	500	225,000	540		80	
본체 1	80	80,000	100	110,000	120		60	

* 물가인상(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선입선출은?

- 먼저 들어온 재고(싼 것)이 먼저 나가므로, 매출원가 → 낮음. 기말재고자산 → 높음

평가방법	매출원가	이익	자산(기말재고)
선입선출	낮음	많음	큼
이동평균법	중간	중간	중간
후입선출	높음	적음	작음

*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회복이 불가능한 것. 예,수량부족)

- 수량이 감소한 경우, 감모손실=손실된 수량 * 취득원가
- 정상적인 감모손실: 매출원가에 포함.
- 비정상적인 경우: 재고자산감모손실 (영업외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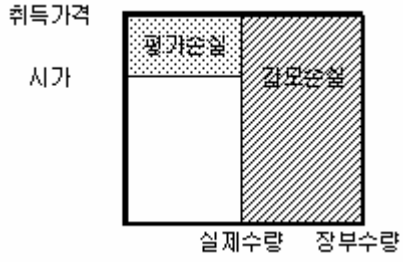

* 재고자산 평가손실(회복 가능한 일시적 손실, 시가하락)

-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떨어진 경우, 평가손실 = 실재수량 * 가격차이
- 정상적인 경우: 매출원가에 포함.
- 비정상적인 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 (영업외 손실)

유형11) 투자자산

- 영업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여유자금의 활용하기 위한 자산
- 이윤의 획득이나 타회사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

* 투자자산의 종류
- 장기금융상품: 만기1년 이상 혹은 사용이 제한된 예적금
- 유가증권: 만기보유증권(채권), 매도가능증권
-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채권
- 투자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건물 등
- 보증금: 전세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 이연법인세차:법인세비용보다 많이(미리) 납부한 법인세

유형12) 가지급금의 처리

- 정확한 금액이나 용도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가지급금 50,000 / 현금 50,000
- 출장후 정산해 보니 출장비가 80,000원이 소요된 경우. 현금 추가 지급
  여비교통비 80,000 / 가지급금 50,000
  현금 30,000
- 출장후 정산해 보니 출장비가 30,000원이 소요된 경우. 현금 수령
  여비교통비 30,000 / 가지급금 50,000
  현금 20,000

유형13) 현금과부족 -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확률 30%)

- 장부상 현금 잔액과 실제 현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임시적인 계정.
- 추후에 원인을 밝혀 원래의 계정으로 전환해야 함.
- 결산시에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잡이익(영업외 이익)이나 잡손실(영업외 비용)로 처리
- 예) 장부상의 현금 잔액보다 현금 50,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다.
  현금과부족 50,000 / 현금 50,000
- 출장비 지급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원인이 밝혀졌다.
  여비교통비 50,000 / 현금과부족 50,000
- 기말에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결산분개시)
  잡이익 50,000 / 현금과부족 50,000
- 예) 원인을 알 수 있는 현금 1,000,000원이 발견되다.
  현금 1,000,000 / 현금과부족 1,000,000
- 외상매출금 회수한 돈임이 밝혀졌다.
  현금과부족 1,000,000 / 외상매출금 (거래처) 1,000,000

유형14) 당좌자산

* 당좌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선급금 등

* 현금 및 현금 등가물
- 현금: 통화, 타인발행수표, 우편환증서, 공사채 이자지급표 등 통화 대용증권
- 현금등가물: 현금 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요구불 예금(당좌 예금, 보통예금),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 Cf. 자기 발행 수표: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처리

* 금융상품
- 단기: 만기 1년 이내의 금융 상품: 양도성예금증서(CP), 어음관리구좌(CMA), 기업금전신탁, 기업어음(CP), 환매체어음(RP) 등
- 장기: 만기 1년 이후의 금융 상품. 투자자산(고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	화폐, 자기앞수표, 일람출급어음, 사채만기 이자표, 보통예금, 당좌예금, 3월 이내의 정기예금 및 적금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및 적금 (3월 이상 1년 이내 만기)
장기금융상품	1년 이후의 정기예금 및 적금. 투자자산(고정자산)

유형15) 매입채무와 단기차입금

*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지급어음(금액,만기일을 표시한 증서 채무)
- 진성어음: 상거래에 기반한 대금 지급을 목적(매입채무)
- 융통어음: 자금 조달을 목적.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 재고자산 매입(상품, 원재료)이외의 대금 지급을 위한 어음 발행
- 실무) 평소에는 지급어음을 처리했다가, 기말에 미지급금이나 단기차입금으로 전환
- 시험) 거래 발생시 바로 미지급금으로 처리.

* 당좌차월과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만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
- 당좌차월: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 마이너스(-) 부분
- 당좌차월은 단기차입금으로 처리

유형16) 사채 (회사채)
- 주식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의 채무임을 증명하는 증권을 발행하고 일정액의 이자와 일정 기간 이후에 원금 상환을 계약하고 차입한 채무.
- 액면 금액, 만기일, 액면이자율이 있으며, 여러 방법으로 발행 됨(액면, 할인, 할증).
- 사채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

* 사채의 회계 처리

- 예: 액면가 1,000,000원, 액면이자율 5%, 만기 5년인 사채를 957,878원에 할인발행한 경우, 유효이자율(시장이자율)은 6%.
- 사채는 액면가로 기록하고 평가계정인 할인발행차금으로 표시

  차) 현금 957,878 / 대) 사채 1,000,000 (액면가액)

  사채할인발행차금 42,122
- 이자 지급시에는 '장부가액(사채-할인발행차금잔액) * 유효이자율'을 이자비용으로 처리
- 액면이자(액면가 * 액면이자율)와의 차이를 사채할인발행차금에서 상각

  차) 이자비용 57,347 / 대) 현금 5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7,473
- 만기시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잔액이 0원이며 장부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

  차) 사채 1,000,000 / 대) 현금 1,000,000 (상환시)

유형17) 자본의 분류

- 자본금: 주주가 실제로 납입한 주금 중에서 액면가액

Cf) 잉여금: 자본금을 초과하여 갖고 있는 자본

- 자본잉여금: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 배당의 대상 아님.
- 이익잉여금: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인한 잉여금. 배당가능.
- 자본조정: 대응 자본이 확정적이지 않는 순자산의 증감

* 자본잉여금

- 통상적 영업활동 이외의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금
- 주주에 대한 배당이 제한적
- 주식발행초과금(주식의 할증발행시 자본금 초과분),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조정(contra stockholder's equity)

- 순자산의 증감을 가져왔으나, 이에 대응하는 자본의 구성 항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 성격의 자본 항목
-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에 대한 자본금과의 차이
- 배당건설이자: 2년이내에 개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본금의 5%한도내에서 지급하는 배당금

자기주식: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기타: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미실현자본 등

유형18) 주식의 발행

* 주식 발행(증자)시의 회계 처리

- 액면금액(액면가 * 발행주식수)만큼을 자본금으로 처리
- 초과분(할증발행):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 부족분(할인발행):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 주식발행시에 발행한 비용(주식발행비)는 유입된 현금에서 차감.

* 주식 할증발행

- 액면가 5,000원 주식 10주를 주당 7,000원에 발행, 비용 10,000원

  차) 현금 60,000 / 대) 자본금 5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

* 주식 할인발행

- 액면가 5,000원 주식 10주를 3,000원에 할인 발행. 비용: 10,000원

  차) 현금 20,000 대) 자본금 5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30,000

유형19)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손익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유보된 금액
- 주주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금액.

* 이익잉여금의 종류

- 이익준비금: 배당의 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상법에서 강제. 자본금의 50%까지 적립하며, 배당이 제한된다.
- 법정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리금 등
- 임의적립금: 정관 혹은 주총의 결의에 따라 임의로 적립.

  예) 사업확장적립금, 감채기금

* 결손금 발생시에 손실의 보전 순서

- 미처분이익잉여금 → 임의적리금 → 법정적립금 → 이익준비금 → 자본잉여금의 순서

* 이익잉여금의 처분 (실습. 기초자료)

- 순이익의 처리: 당기순이익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대차대조표에 반영.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당기순이익을 비롯한 이익잉여금의 처분 내역 표시

1. 처분전 이익 잉여금: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당기 순이익 등
2. 임의 적립금 등의 이입액
3. 이익잉여금 처분액: 각종적립금,준비금,배당금 등
4.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1+2-3 으로 대차대조표에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7 기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처분확정일 2006년 3월 15일

회사명 : (주)우리전자 (단위 : 원)

과 목	제 7 (당)기	
	금	액
Ⅰ.처 분 전 이 익 잉 여 금		**'734,164,040**
1.전 기 이월 이익잉여금	156,824,048	
2.회계변경의 기 준 효과	0	
3.전기 오류 수 정 이 익	0	
4.전기 오류 수 정 손 실	0	
5.당 기 순 이 익	577,339,992	
Ⅱ.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0**
1.	0	
2.	0	
합 계		**'734,164,040**
Ⅲ.이 익 잉 여 금 처분 액		**0**
1.이 익 준 비 금	0	
2.기 업 합 리화 적립금	0	
3.배 당 금	0	
가.현 금 배 당	0	
나.주 식 배 당	0	
4.사 업 확 장 적 립 금	0	
5.감 채 적 립 금	0	
6.배 당 평 균 적 립 금	0	
Ⅳ.차 기 이월 이익잉여금		**'734,164,040**

2006/10/10 16:40 1/1

유형20) 손익의 계산

- 손익(손실, 이익) 이익 = 수익 - 비용
- 수익: 매출,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 비용: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 이익: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손익계산서 공식
매출액
-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비용
경상이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영업외 수익과 비용
- 이자수익, 이자비용, 임대료: 건물의 임대를 통한 수익.
  cf)임차료 (영업비용)
- 배당금수익,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손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손실), 외환차익/외환차손,외화환산이익/손실
- 유형자산 처분이익(손실), 기부금 cf) 접대비 (영업비용)

* 특별 손익
- 자산수증이익: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 cf) 기부금 (영업외비용)
-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재해손실

* 판매비와 관리비
- 급여: 판매/관리 부서 종업원의 보수
-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상대계정
- 복리후생비: 판매/관리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 건강보험료 등.
- 임차료:판매/관리 용도의 토지,사무실,매장 등을 임대/사용료.
  cf) 수입임대료: 영업외 수익
- 접대비:거래처 관계자에게 소요되는 비용. 축의/조의금, 선물구입, 기밀비.
  cf) 기부금: (영업외 비용)
-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Cf. 무형자산상각비
- 세금과공과: 재산세
- 광고선전비: 제품판매와 기업광고를 위해 지출된 비용.
- 연구비: 제품연구 등에 소비되는 비용.
- 경상개발비: 제품 및 기술 개발비.
  cf) 개발비(무형자산): 식별가능, 측정가능, 미래의 효익 기대.
- 대손상각비: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 cf)기타대손상각비 (영업외)
- 기타: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 더존회계 프로그램 1급 실기 시험에서 꼭 명심할 것.**

- 채권/채무는 반드시 거래처를 기록할 것.(외상매출/매입금,지급어음,받을어음,차입금,미지급금,미수금,선급금,선수금,당좌예금 등)
- 동일한 거래는 동일한 전표 번호를 지정. 전표 번호의 수정은 F3 키 이용.
- 매입매출전표 등록시 다른 거래처는 <적요변경>을 통해 수정
- 결산 사항 입력 후 전표 등록 F7,

<중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8번대, 제조경비는 5번대로 구분하여 입력
판매비와 관리비: 본사, 영업소, 매장, 사장, 관리부, 회계부, 영업거래처 등등
제조경비: 공장, 창고, 기계장치, 공장장, 생산직원, 원재료 매입처, 자재부

* 유의 사항

- 키보드와 단축키를 이용한다.(마우스는 가능한 이용하지 말것)
- 000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숫자키 패드의 + 키를 이용한다.
- 중요한 계정과목의 코드는 암기 한다.(현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을어음, 지급어음, 당좌예금, 상품매출, 미지급금 등)
-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의 계정과목코드는 원계정의 과목코드의 바로 다음번호.
  예) 외상매출금 108,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09

* 계정과목, 거래처 등의 입력

- 코드를 아는 경우, 코드를 직접 입력
- 두 글자를 입력한 후 엔터를 치면 해당 내역이 나타나므로 선택하면 된다.
- F2키를 누르면 목록이 나타나므로 선택하면 된다.

*** 실습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 (전기분 수정, 전표입력)**

차변	대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유형1)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 (확률 70%)

1) 손익계산서 수정: 당기순이익 계산
2) 전기분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순이익을 수정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계산
3)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에 반영

유형2) 비용 거래

- 비용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차변에 기록하고
-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현금, 미지급금(카드 결제한 경우 카드 회사로), 당좌예금(당좌수표 발행) 등을 대변에 기록.
- 복리후생비: 직원에 대한 식대, 의복(유니폼), 선물, 경조사비, 교육비, 차와 음료수, 직원 식사용 물품 구입, 건강보험 등의 회사 부담금 등
- 접대비(판매비와관리비) : 거래처 직원에 대한 식대, 선물, 경조사비
- 차량유지비: 주유, 엔진오일, 주차비 등
- 보험료: 화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 임차료: 건물의 임차에 따른 비용 지급 (월세)
- 소모품비: 복사용지, 토너 등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비용 처리. cf) 소모품
- 기부금(영업외 비용): 거래처 이외에 지불한 것. 불우이웃돕기 등.
- 이자비용(영업외 비용) : 차입에 따른 이자 지불
- 여비교통비: 출장시에 사용한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 수선비: 유형자산의 수리. Cf) 차량유지비: 자동차의 수리,주유,엔진오일,주차비
- 세금과공과금: 재산에 관련된 각종 세금. 자동차세, 재산세 등
- 지급수수료: 추심수수료, 발송비, 송금수수료 등의 소액 수수료

예) 직원의 유니폼을 3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함.

- 복리후생비 30,000 / 미지급금 (거래처) 30,000

* 주의 - 부가세를 포함(지급)하는 비용거래(매입매출전표입력)

- 매입전표로 처리. (차변에 부가세대급금이 나타남)

유형3) 급여 지급 거래

- 종업원에 지급하는 급여 총액을 차변에 급여로 기록하고,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액을 대변에 예수금으로 처리. 차감 지급액을 대변에 현금, 보통예금 등으로 대변에 기록.
- 생산직의 경우 임금(5), 관리부서나 판매직의 경우 급여(8)로 처리
- 예) 급여 3,500,000원 (생산직 1,500,000원 포함)중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 급여(8) 2,000,000 / 예수금 500,000
  임금(5) 1,500,000 보통예금 3,000,000

유형4) 유형자산에 대해 발생한 지출

- 건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에 대해 발생한 지출
- 자본적 지출인 경우 원래 자산의 증가, 수익적 지출인 경우 비용(차량유지비, 수선비 등)으로 처리.
- 자본적 거래로 보는 경우: 내용연수 연장, 성능향상, 생산량 증대
- 수익적 지출: 원상 회복, 능률 유지
- 예) 업무용 화물차에 대해 에어컨 설치 및 엔진오일 교환으로 각각 100,000원, 30,000원을 카드로 결재하다. 에어컨 설치는 자본적 지출로, 엔진오엘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 차량운반구 100,000 / 미지급금 (카드회사) 130,000
  차량유지비 30,000

<주의> 수익적 지출에 따른 비용 처리 방안

- 자산의 사용 부서에 따라 판관비(관리부서, 영업부서), 제조경비(공장, 자재부서)로 구분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서 부가세를 지급하는 경우, 불공으로 처리하므로 부가세금액을 비용에 모두 포함. (매입매출전표의 경우)

유형5) 매출채권의 처리

-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의 대손, 부도, 할인, 배서양도
-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

  차) 대손충당금 500,000 / 외상매출금 800,000

  대손상각비 300,000
- 부도가 나는 경우, 부도어음으로 처리

  차) 부도어음(거래처) 100,000 / 받을어음(거래처) 100,000
-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차입거래로 보면 (단기)차입금에 이자비용, 처분(매각)거래로 보면 받을어음을 없애주고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
- 예) 받을어음 1,000,000원 짜리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900,000원을 받다.

→ 차입거래: 차입금, 지급이자로 처리 (어음은 담보로 제공)

예) 현금 900,000 / 차입금 1,000,000

지급이자 100,000

→ 처분거래: 받을어음을 없애고,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

예) 현금 900,000 / 받을어음 1,0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00,000 (영업외)

- 배서양도: 제3자에게 양도, 혹은 물대로 지급

  회계처리: 차) 외상매입금 (매입거래처) xxx / 받을어음 (어음거래처) xxx

유형6) 수금 거래

- 외상매출금, 미수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의 채권을 수금한 경우, 해당 채권을 대변에.
- 수금 방법을 따라 어음으로 받은 경우, 받을어음(거래처), 수표로 받은 경우 현금 등으로 차변에 기록
- 예)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 보통예금 xxx / 받을어음(거래처) xxx

유형7) 선수금, 선급금의 처리

- 매출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은 것은 부채(의무가 있음)이므로 대변에 선수금(거래처).
- 매입계약에 따라 지불한 계약금은 자산으로 차변에 선급금.
- 본 거래시에는 선수금과 선급금을 반대로 기입하여 없애줌.
- 예) 2,000,000원에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00원 지급
- 선급금(거래처) 500,000 / 현금 500,000
- 상품 입고시에는 선급금을 상품으로 대체해 준다.

  상품 2,000,000 / 선급금(거래처) 500,000

  외상매입금(거래처) 1,500,000

유형8) 차입 혹은 대여 거래

- 은행이나 거래처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그 상환일에 따라 단기차입금 (1년 이내), 장기차입금으로 대변에 기록
- 예) 당좌예금 xxx / 단기차입금(거래처) xxx

- 돈을 빌려주는 경우, 만기일에 따라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으로 차변에 기록
- 예) 단기대여금(거래처) xxx / 현금 xxx
-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가 세무세에 납부해야 한다.
- 예) 단기대여금 5,000,000원을 상환하고 이자 500,000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 100,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단기대여금(거래처)	5,000,000	/ 당좌예금	5,400,000
지급이자	500,000	예수금	100,000

유형9) 부가세 혹은 소득세 납부

- 부가세를 납부(신고)하는 경우, 부가세예수금(부채, 매출부가세)와 부가세대급금(자산, 매입부가세)을 모두 상계하고, 잔액을 납부하거나 미지급금으로 처리.
- 예) 부가세예수금 3,500,000 / 부가세대급금 2,500,000
  현금 1,000,000 -- 실제 납부금액
- 급여 지급시 공제했던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적립해 두었던 예수금을 상계하고, 그 차액은 복리후생비(판관비, 제조경비 구분)로 처리
-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 등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
- 예) 원천징수한 소득세 500,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다.
  예수금 500,000 / 현금 500,00
- 예)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500,000원과 회사부담분 500,000원(공장직원분 20만원, 관리직 10만원, 판매직 20만원)을 공단에 납부하다.

예수금	500,000	/ 현금	1,000,000
복리후생비(8)	300,000		
복리후생비(5)	200,000		

유형10) 주식 발행 혹은 증가

- 현금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산 구입, 혹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액면금액(액면가 * 발행주식수)을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초과분(할증발행)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부족분(할인발행)은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으로 처리

예) 액면가 5,000원 주식 10주를 주당 7,000원에 발행하여 건물을 구입하였다.

차) 건물	70,000	/ 대) 자본금	5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 (자본잉여금)

유형11) 매입 차감 항목

- 상품이나 원재료 구입 후, 차감해 주는 항목
- 매입할인(빨리 갚아서 깍아주는 것), 매입에누리(불량으로 할인), 매입환출(불량 반품)
- 원재료와 상품으로 구분하여 계정과목 선택
- 예) 원재료 외상대금 500,000원중 조기 상환으로 50,000원을 할인받고 당좌수표로 상환

차) 외상매입금	500,000	/ 당좌예금	450,000
		매입할인(원재료)	50,000

**** 실습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 (매입/매출전표 입력)**

- 부가세 관련 거래 4문제 12점

* 매출시의 부가세 유형
- 일반적: 과세매출
- Local 수출. 수출용 제품에 필요한 원재료: 영세매출
- 이면확인 카드매출: 카과
- 수출: 수출매출

코드	유형	의미
11	과세매출	일반과세 (부가세 별도)로 10% 부가세
12	영세매출	부가세가 0%, 수출업체에 대한 Local L/C 매출
13	면세매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없음.
15	중합	간이과세자의 매출
16	수출매출	직수출. 부가세 없음, 세금계산서 없음.
17	카과	신용카드에 의한 과세매출. 총공급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분리 표시.
18	카면	신용카드 면세 매출로 부가세 없음.

* 매입시의 부가세
- 일반적: 과세매입
- 불공제:불공매입(접대비,소형승용차,업무무관).원가에 포함
- 수입:수입
- 면세품, 계산서:면세매입
- 수출용원재료:영세매입
- 카드로구입:카드매입

코드	유형	의미
21	과세매입	일반과제 (부가세 별도)로 10% 부가세
22	영세매입	수출용 재화를 위한 매입. 부가세 0%
23	면세매입	면세 재화의 매입. 계산서
24	불공매입	부가세를 지불하였으나 공제받지 못하는 것.
25	수입	수입세금계산서의 입력. 매입세액만 기록.
27	카드매입	신용카드 매입
28	면건	면세, 건별

<u>매출1) 제품매출</u> (과세매출, 수출, 영세매출, 카드과세매출)
- 대변에 제품(상품) 매출(수익). 차변에는 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외상매출금(미수금 아님), 받을어음, 현금(수표로 받은 경우 포함), 선수금(계약금 받은 것을 반제하는 경우) 등
- 매출시 발생한 운반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 운반비 혹은 지급수수료 등
- 외상매출금(거래처) xxx / 제품매출 xxx
  선수금(거래처) xxx 부가세예수금 xxx

* 카드매출시
-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줌.
- 외상거래처가 다른 경우 → <적요수정>을 통해 다른 거래처로 바꾸어주어야 함.

<u>매출2) 유형자산의 처분</u> (과세매출)
- 사용중인 유형자산(차량운반구,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대변과 차변에 없애줌.
- 판매금액과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의 차이만큼을 유형자산처분이익(영어외수익, 대변)이나 유형자산처분손실(영업외비용,차변)로 인식.
- 취득원가 40,000,00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30,000,000원인 건물을 20,000,000원(부가세별도)에 판매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로 받았다.
-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 건물 40,000,000
  미수금 (거래처) 22,0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영업외이익) 10,000,000

매출3) 영업외 수익 (과세매출)

- 건물을 임대해준 경우 (수입임대료) 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을 대변에 기록.
- 예) 매장의 일부를 빌려주고, 3개월분 사용료 300,000원(VAT별도)을 현금으로 받다.
- 현금 330,000 / 수입임대료 300,000 - 입금전표로 처리
  부가세예수금 30,000

매입4) 원재료나 상품의 구입 (과세매입, 영세율, 수입, 카드매입)

- 차변에 상품과 부가세대급금
- 대금 지불 방법에 따라 외상매입금(미지급금 아님), 지급어음, 현금, 당좌예금(당좌 수표를 발행한 경우), 선급금(사전에 지급한 계약금이 있으면), 받을어음(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대금을 기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카드 구입시 카드회사를 거래처로) 등으로 대변에 기입.
- 매입시 발생한 부대 비용(운임비 등)은 상품에 포함시킨다.
- 가구, 건물, 차량 등 그 종류에 관계없이 판매용으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상품으로 처리.
- 상품 xxx / 외상매입금(거래처), 지급어음(거래처), 당좌예금, 선급금(거래처) 등.
  부가세대급금 xx

매입5)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거래 (불공) -- 매우중요

- 공제받지 못하는 비용(접대비, 업무 무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혹은 유지
- 부가세를 포함하여 원가에 포함. (부가세대급금 처리 안함)
- 예) 거래처(영업부20개, 자재부10개) 연말 선물로 참치셋트 3,000,000원어치(VAT별도)를 카드로 구입하다.
  접대비(판) 2,200,000 / 미지급금 3,300,000
  접대비(제) 1,100,000

매입6) 비용 거래 (과세매입, 카드매입)

- 비용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차변에 기록하고,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현금, 미지급금(카드 결제한 경우 카드 회사로), 당좌예금(당좌수표 발행) 등을 대변에 기록.
- 매입거래로 처리.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 주의: 카드거래

- 공급대가(VAT포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주며, 거래처가 다른 경우 <적요수정>을 통해 변경해줌.

* 주의: 접대비성 경비 (불공)

- 거래처 선물,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 등은 모두 접대비이며, 공제받지 못함.
-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납부한 부가세를 원래 경비에 포함시킴.

매입7) 유형자산의 구입 (과세매입, 카드매입, 불공)

- 업무용 건물, 차량운반구(화물차, 오토바이 등), 비품(컴퓨터, 가구, 냉장고, 에어컨 등),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는 경우, 차변에 적절한 자산을 기록.
- 대변에는 대금 지불 방법에 따라 미지급금(어음발행, 카드결재 등), 당좌예금(당좌수표발행 등) 등으로 기록.
- 유형자산 구입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운반비, 설치비, 등록세 등)은 모두 원래 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 예) 업무용 차량을 1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운반비 50,000원, 취득세 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차량운반구 10,150,000 / 미지급금 (거래처)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현금 150,000

* 주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를 구입하는 경우, 불공(공제받지 못하는 매입부가세)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금액을 원가에 포함시킴.

** 결산 분개 사항

- 3문제 * 3점 = 9점 (모두 맞아야 함.)

*** 수동 결산** (일반전표에 12/31로 입력)

1) 선급비용의 처리: 이미 지불한 비용 중에서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기간 미경과분 혹은 선급분)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처리하고, 해당 비용을 감소 (대변)
분개) 선급비용 xxx / 비용(예, 보험료) xxx

<주의> 선급비용과 선급금의 차이 - 둘다 납부하지 않은 비용
- 선급비용: 비용납부일이 도래하지 않은 비용
- 선급금: 비용납부일이 도래하였으나 기간을 고려할 때 발행한 비용

2) 선수수익의 처리: 이자수익, 수입임대료 등을 수익으로 받았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미간 미경과분, 선수분)을 선수수익(부채)로 처리하고, 해당 수익을 감소시킴 (차변)
예) 4/1 수령한 임대료 수입 600,000원은 1년치이다. 9개월은 실현되었고, 3개월분(600,000/12 * 3개월)은 선수분이다.
- 수입임대료 90,000 / 선수수익 90,000

3 미지급 비용의 처리: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비용 미지급 분), 비용을 인식하고(차변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미지급비용(부채)으로 대변에 인식.
- 분개) 비용 (예, 급여, 이자비용 등) xxx / 미지급비용 xxx
- 예) 급여의 미지급분 1,500,000원을 계상하다.
- 급여 1,500,000 / 비지급비용 1,500,000

4) 미수수익의 처리

-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 (미수분 수익)은, 수익을 인식하고(대변에), 미수수익(자산)으로 인식.
- 분개) 미수수익 xxx / 이자수익 xxx

5) 소모품의 처리

- 소모성 자산(토너, 복사용지, 필기구 등)의 사용 내역에 대한 처리.
- 구입시에 자산(소모품)으로 처리한 경우, 사용분만큼을 비용 처리.
- 분개) 소모품비 xxx / 소모품 xxx -- (사용분)
- 구입시에 소모품비로 전액 비용처리한 경우, 미사용분만큼을 자산으로 돌려줌.
- 분개) 소모품 xxx / 소모품비 xxx -- (미사용분)
- 예) 소모품 미사용액 100,000원을 계산하다. 구입시 전액 비용처리하였음.
- 소모품 100,000 / 소모품비 100,000

*** 자동 결산** (결산자료입력 메뉴에 기록하고, F7을 눌러 전표추가)

1)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의 기말 재고

2) 채권별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액

- 채권에 대한 대손(채권을 받지 못하고 띠끼는 것) 예상액을 추정하고, 예상액 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놓아야 한다. (보충법)
-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5,000,000원인데 대손 예상액이 1%라면,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50,000 이어야 한다. 만일,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0 원이라면 30,000원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 분개: 대손상각비(판) xxx / 대손충당금 (각 채권별로) xxx

3) 유형 자산별, 비용구분(판관비,제조경비) 감가상각 설정 금액

- 감가상각금액을 주고 기말 수정 분개 입력.
- 분개: 감가상각비(판) xxx / 감가상각누계액 (각 자산별로) xxx
  감가상각비(제) xxx

(주의) 자동결산 전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표등록의 12/31자에서 전표 선택 후 삭제를 실행.

**** 실습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 (조회)**

유형1) 부가세 관련 조회 (100%). -- 반드시 맞추어야 함

* 조회 내용
- 부가가치세신고서: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 기타매입세액, 과세표준: 에서 기간 입력후, <신고 내용>을 통해 요약 정보 확인
-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부가세액

* 기간입력
- 1기 예정:1~3월, 1기 확정:4-6월
- 2기 예정:7-9월, 2기 확정:10-12

유형2) 회계 정보 조회 (100%). 반드시 맞추어야 함)

* 조회 내용
- 총계정원장: 특정 계정과목의 월별, 일별 비교. 예)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
- 합계잔액시산표: 1월~특정월 까지의 계정과목별 증가, 감소, 잔액 파악.
- 일/월계표 : 특정 기간 동안(부터~까지)의 계정과목의 증가, 감소액 파악.
- 거래처별원장: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처별 증감과 잔액 파악.
- 현금출납장: 특정 기간(부터~까지)의 현금의 입/출금 세부 내역 및 잔액 파악.
- 계정별원장: 특정 계정과목의 세부 내역 및 잔액 파악.
  예) 6월의 외상매출금 회수거래는 건수와 합계 금액은?

경영 실무과 ERP 능력을 겸비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전문가의 양성

용인송담대학 경영정보과

www.imis.ac.kr

“비즈니스 리더의 꿈” 카페

cafe.naver.com/ysmis